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October 29 Itaewon Disaster

# 보도자료

2026. 3.12.(목), 즉시보도

피해자 권리보장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수립

담당자 대외협력과장 고영호(02-2650-1081), 담당자 이훈(02-2650-1085)

<청문회 1일차 리뷰>

## 예방·대비 단계의 실패 : 이태원 참사, 그날의 시작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는 청문회 1일차에서 112 신고 대응, 경찰 경비 배치, 마약류 특별형사활동, 용산구청의 전단지 제거 지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소방 대응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참사 전후의 사실관계와 책임 문제를 점검하였다.
- 이날 청문회에서는 참사 이전 반복된 위험 신호가 왜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참사 당일 각 기관이 어떤 판단과 조치를 했는지, 이후 책임 회피나 축소가 있었는지를 세션별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 1세션. 반복된 112 압사 위험 신고에도 현장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

- 특별조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부터 밤 10시 11분까지 접수된 11건의 112 압사 위험 신고와 관련하여, 왜 단 한 건도 실질적인 현장 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였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의 무전 지령이 거의 없거나 형식적 수준에 그쳤고, 그에 따라 이태원파출소의 현장 출동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용산경찰서 11건 중 2건, 서울경찰청 11건 중 1건에만 무전 지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실제 출동이 없었음에도 이태원파출소가 신고 처리시스템에 '현장 조치', '상담 안내 종결' 등으로 입력한 사실, 이를 확인하고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대외적으로 4건 출동, 7건 현장 조치 종결이라고 발표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 2세션-1.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경비 공백 문제

-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실 이전이 용산경찰서 경력 배치와 참사 당일 업무 공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였다.
-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이 참사 당일 업무 공백으로 이어졌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러한 사정이 참사의 배경이 될 수는 있으나, 당일 경비 공백은 결국 용산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경비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만능주의 타파' 기조와 수익자부담원칙이 경비기동대의 소극적 운용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증인들은 이를 부인하였다.
- 한편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이후 서울경찰청 안보부장으로부터 경비기동대 배치와 관련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 2세션-2. 마약류 특별형사활동의 배경과 실제 운용

-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전개된 마약류 특별형사활동의 배경과 형사들의 실제 역할을 확인하였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의 특별형사활동이 가시적인 형사 활동 중심으로 이뤄졌고, 실질적인 단속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하였다. 또한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수사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점도 함께 짚었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형사활동에 투입된 형사들이 실제로 인파 관리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하였다. 이임재 前 경찰서장은 형사들에게 인파 관리 역할을 부여했다고 진술했으나, 최을천 前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관련 교양이나 장비 지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당시 형사들이 참사 이전 인파 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아울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직후 희생자 유류품과 부검 과정에서 마약 성분 검사가 이뤄진 경위도 확인하였다. 해당 검사가 참사와 마약의 무관함을 밝히기 위한 취지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그 취지가 현장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이후 관련 보도가 2차 가해 여론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 한편 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에게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조치 사항 및 참사 당일 전개된 마약류 특별형사활동의 지시 경위 등을 묻고자 하였으나, 선서와 진술을 거부하여 관련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특별조사위원회는 김광호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였다.

### 3세션. 용산구청의 전단지 제거 지시와 재난대응 차질

-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를 위해 당직실 직원을 동원했고, 그 결과 재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였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용산경찰서 외사과장의 요청, 당직사령의 두 차례 거절, 이후 비서실장의 재지시와 '구청장 지시 사항'이라는 전달 과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태원 인파 관리 출동을 준비하던 인력이 전단지 제거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 당시 용산구청 당직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겸하고 있었고,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참사 발생 직후 대응 차질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 또한 전단지 제거 결과가 사진과 함께 비서실장, 구청장, 정재관 前 대통령 경호처 단장에게 차례로 보고된 경위도 확인하였다. 박희영 구청장은 정재관과의 관계가 사적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정재관을 통해 대통령실과 소통했을 가능성을 짚었다.
- 또한 양성우 위원은 전단지 제거가 당직실의 해당 업무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 **4세션-1.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책무성 검증**

-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하였다. 대통령 지시 전파와 중대본 설치 결정이 늦어진 원인으로 행정안전부가 '인파 밀집에 따른 압사'라는 재난에 대해 주관부처와 주관부서를 적시에 정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도 NDMS를 통한 전파를 39분에서 55분을 지연한 사실, 그 배경에 행정안전부가 재난 주관부처로 확정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던 정황도 확인하였다.
- 장관 보고 지연과 관련해, 상황담당관이 22시 48분 "CPR(추정) 15명" 상황을 인지하고도 규정에 따른 직접보고를 하지 않고, 상황실장이 보고하는 관행에 따라 장관 보고가 40여분이 늦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과정이 '관행'이 '규정'을 어긴 사례라고 보았다.
- 아울러 특별조사위원회는 소방 대응 단계 발령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긴급문자 전파 오류가 발생했고,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 조직이 현장 상황 파악과 지원보다는 전달·전파·보고에 머물렀다고 지적하였다.

## 4세션-2.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과 컨트롤타워 부재

-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대통령실이 재난 대응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와 대통령실 내부 업무분장이 적절했는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문구 삭제 경위를 확인하였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이 23시 03분 최초 사고 보고를 받은 이후 00시 42분에야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또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국정조사에서 당시 회의에서 참사 현장 영상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고, 당시에는 현장 영상 대신 제한된 CCTV 화면만 확인 가능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 아울러 '실무본'으로 불린 문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내부 업무 안내자료 수준의 문서였으며, 당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상황실 간에 재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5세션. 소방 대응의 적절성과 현장 지휘,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실태

- 특별조사위원회는 최초 119 신고 접수와 출동 지령, 대응 단계 발령과 지휘권 선언, 임시응급의료소 및 중증도 분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소방 대응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상황실이 당시 이태원 핼러윈 축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대응 계획도 없었다는 진술을 확인하였다.
- 압사 위험 119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접수자 판단으로 출동 지령이 내려지지 못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 현장에 출동했던 경희대 재난의료지원팀 교수는 참사 현장에 임시 응급의료소가 없었고, 중증도 분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산소통조차 없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 대응 단계 발령과 지휘권 선언과 관련해서는, 최성범이 지휘와 판단이 적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문위원들은 현장 도착 이후 상당 시간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하였다.
- 또한 소방 측이 대응 1단계 발령과 동시에 긴급구조통제단이 자동 가동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다른 증인의 상반된 진술을 통해 당일 소방 대응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위원회는 보았다.
- 임시응급의료소와 중증도 분류 운영과 관련해서도, 소방은 정상 가동을 주장했으나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전 기록과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설치와 운영이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청문회 1일차를 통해 참사 이전 반복된 위험 신고에 대한 미출동, 경찰 경비 공백, 마약류 특별형사활동의 한계, 용산구청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문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의 지휘·전파 지연, 소방 대응의 미흡 등 참사 전후 여러 단계에서 구조적 문제와 책임 공백이 중첩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끝//